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5
----------	-----

발의일자 : 2009. 2. .

발 의 자 :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09. 1. 19일자로 시행된 남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기 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 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국(局)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 라. “경제산업국” 중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과, 유기농업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 마.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신설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라.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까지 한시적인 경우에 한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제산업국 중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지식정보도서관, 시 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만, 가부터 마목까지의 기관·부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에 한한다)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중 지역경제과, 유기농업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교통도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③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운영위원회 가.~다.(생략) <u><신 설></u></p> <p>2. 자치행정위원회 가. <u>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나. <u>3S고객만족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총무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보건소, 지식정보도서관, 시 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사. <u>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다만, 가부터 마목까지의 기관·부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에 한한다.</u>)</p> <p>3. 산업건설위원회 가. <u>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나. <u>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교통도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1. 운영위원회 가.~다.(현행과 같음) 라. <u>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까지 한시적인 경우에 한한다)</u></p> <p>2. 자치행정위원회 가. <u>감사담당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총무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경제산업국 중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보건소, 지식정보도서관, 시 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다만, 가부터 마목까지의 기관·부서로부터 수탁받은 사무에 한한다</u>)</p> <p>3. 산업건설위원회 가. <u>경제산업국 중 지역경제과, 유기농업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환경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교통도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u>의장을 제외 한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 1인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u>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u></p>